KVIC
한국벤처투자(주)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만화와 함께 쉽게 풀어보는

초기기업에서 IPO까지 투자계약서 바이블 · 투자유치가 처음이세요?

한국벤처투자(주)

만화와 함께 쉽게 풀어보는

초기기업에서 IPO까지 투자계약서 바이블

투자유치가 처음이세요?

KVIC
한국벤처투자(주)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투자
계약

투자유치가 처음이세요?

- 초기기업에서 IPO까지 투자계약서 바이블 -

등장인물

배태랑 (30세, 男)

사업은 베테랑, 투자유치는 왕초보!

모바일 e북 회사 '놀자북스'를 창업하고 CEO가 된 청년기업인.
첫 투자의 꿈에 취한 그에게 투자 계약의 중요성을 알려준
이현명 변호사와 선배 고은혜의 도움으로 투자유치의 AtoZ를 배우며
건실한 기업인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현명 변호사 (30대 중반, 男)

위기를 기회로... 청년창업인들의 꿈을 지켜주는 멘토 변호사.

법무법인 다반사에서 민사, 특히 투자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열혈 변호사. 투자 계약서 관련 조언에서만큼은 동료들도 인정한다.
배태랑의 선배 고은혜와의 인연으로 배태랑의 투자계약서 자문을
맡는다.

고은혜 (32세, 女)

배태랑의 학교 선배이자 창업 선배 CEO.

배태랑의 학교 선배이자 창업 선배로 e북 전문 출판사 고은북 CEO.
투자 계약 위반으로 곤경에 처했다가 이현명 변호사의 도움으로 다시
승승장구하고 있다.

안전혜 과장 (30대 중반, 女)

한울 벤처캐피탈 담당자.

배태랑의 1차 투자자인 한울 벤처캐피탈의 담당자.

신중한 팀장 (40대 초반, 男)

누리 벤처캐피탈 담당자.

배태랑의 2차 투자자인 누리 벤처캐피탈의 담당자.

진지희 대표 (40대 초반, 女)

레자코믹스 대표.

배태랑의 거래처인 레자코믹스 대표. 놀자북스에 투자 의사를 밝힌다.

사라 정 이사 (40대 초반, 女)

아마조네스 COO.

놀자북스에 M&A를 제안하는 글로벌 플랫폼 아마조네스의 최고운영책임자.

안 내

1. 본 만화책은 『초기기업(Seed)을 위한 벤처캐피탈 투자 계약서 해설서』를 바탕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2. 본 만화책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 종사자들에게 참고 자료로서의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본 만화책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복사, 공개 또는 유포가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상호의 이해와 신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것입니다. 당사는 본 만화책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귀하 또는 귀사가 본 만화책에 포함된 정보, 의견 및 추가적인 질의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떠한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본 만화책의 기재 내용은 2018년 10월 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및 지침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법령의 제·개정, 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 차

프롤로그. 기회를 잡다! ---------- 06

1. 투자계약, 기본기는 알고 있나요? ---------- 10
2. 계약에서 입금까지(1): 도장 찍고 시작할 일 ---------- 24
3. 계약에서 입금까지(2): 바뀐 등기부등본을 받기까지 ---------- 34
4. 투자금, 함부로 썼다가 큰코다친다? ---------- 44
5. 2차 투자 유치, 이것이 먼저다? ---------- 52
6. 이게 계약위반이 된다고요? ---------- 62
7. M&A vs IPO, 당신의 선택은? ---------- 72

에필로그. 유니콘 기업으로! ---------- 80

부록1. 법률용어 해설 ---------- 84
부록2. 보통주 투자계약서 양식 ---------- 88
부록3.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양식 ----------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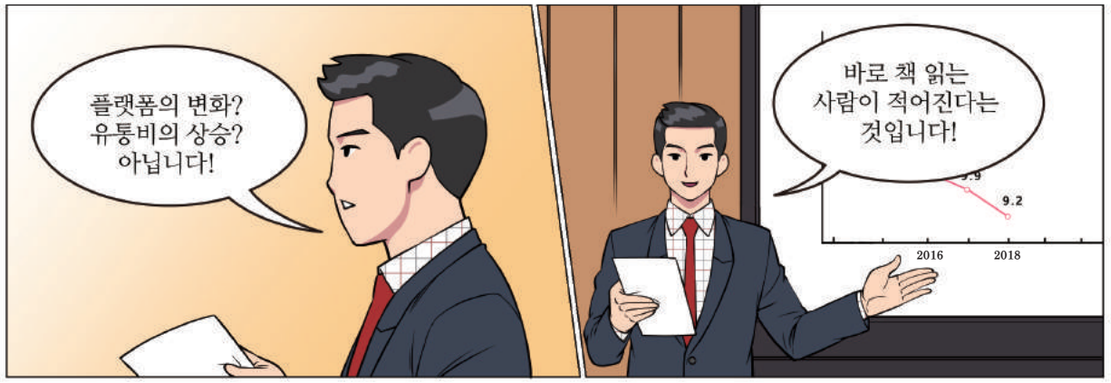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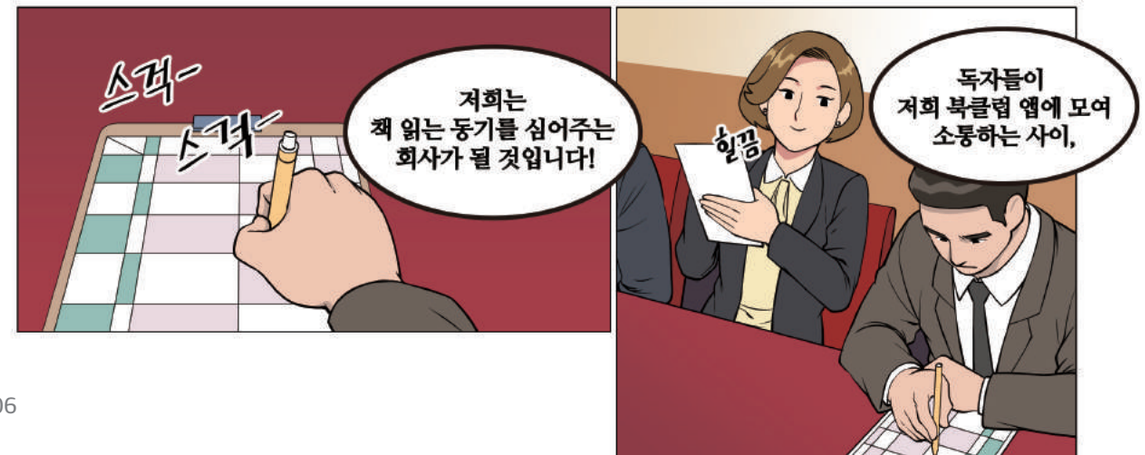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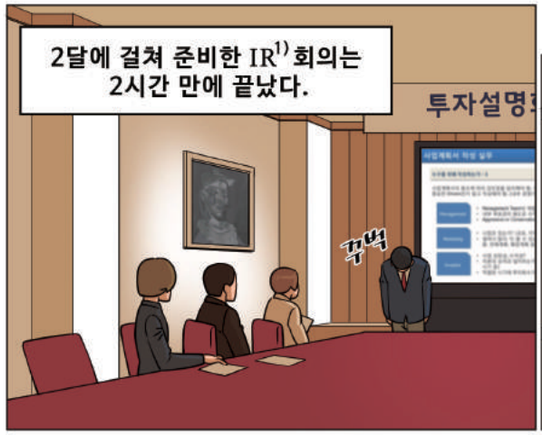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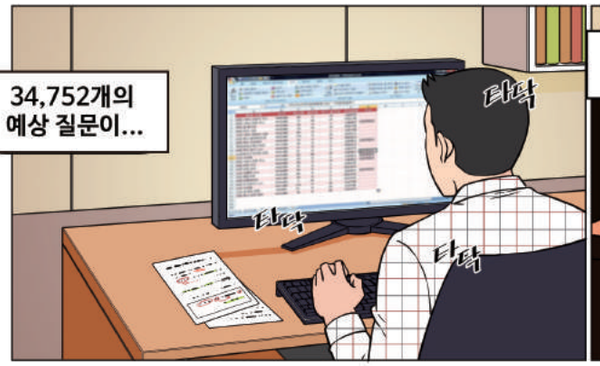

1) IR (Investor Relation : 투자 설명회) : 기업이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2) 데스밸리 (Death Valley : 죽음의 계곡) : 초기 기업이 BEP (손익분기점) 도달 전까지 수익보다 지출이 큰 가장 힘든 시기.

그건 나의 큰 착각이었다.

투자계약서요?

그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쯧쯧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사업만 베테랑이면 뭐 해? 투자유치엔

왕.초.보

선배, 그만해요... 나 아퐈~

나도 너처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 3년 전 우리 고은북스 첫 투자 받을 때!

기억나요! 선배가 아르망디 2006 쏜 날-

그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

그 3개월 뒤부터 송사에 시달렸잖아.

그러고 보니...

선배, 왜 그래요?

꺼져~ 다 귀찮아...

그게 다 투자계약서를 몰라서 생긴 일이야.

그, 그래요?!!

놀자 BooK

NO!

선배... 저 어떡해요? 투자받지 말까?

다시 데스밸리로 가고 싶어?

내일 바로 이 분을 찾아가 봐-

엇? 이현명... 변호사?

투자계약 관련해서는 최고의 멘토야!

고마워요. 선배!!!

그렇게 나의 투자계약 스터디가 시작되었다!

Chapter 1.

투자계약, 기본기는 알고 있나요?

다음 날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이 변호사님께 전화를 했다.

걱정과 달리
이 변호사님 목소리는 따뜻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2시에 뵙죠~

참, 오실 때
'법인등기부등본'이랑
'놀자북스 정관'
부탁드릴게요.

네? 넵!

'법인등기부등본'이랑
'정관'을 가져오라고?

다음날

오셨어요~

법무법인
다반사

법무법인 다반

법무법인 다반사
대표변호사 이현명입니다.

놀자북스 배태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투자유치
성공하신 것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커피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괜히 긴장되네요.
낯설어서 그런가?

두리번

두리번

사업하려면
법이랑
친해져야 해요.

투자유치가 처음이신가요?

아버지가 투자해주신 것
빼면 처음이죠.

자본금으로
분류된 돈인가요?
아님 주주참여?
아부지,
유산 좀
땡겨 주세요!
그래도 은행 대출
하나 없이 꾸려온
회사라구요~
대출과 투자는
개념부터 다르죠.
그, 그런가요?
배 대표님... 투자의 개념은
정확히 아시는 것 맞죠?
투자계약서 쓰기
전에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요?
투자계약서
잘못 써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저 투자유치
왕초보예요.
의외로
배 대표님
같은 분 많으세요.
그렇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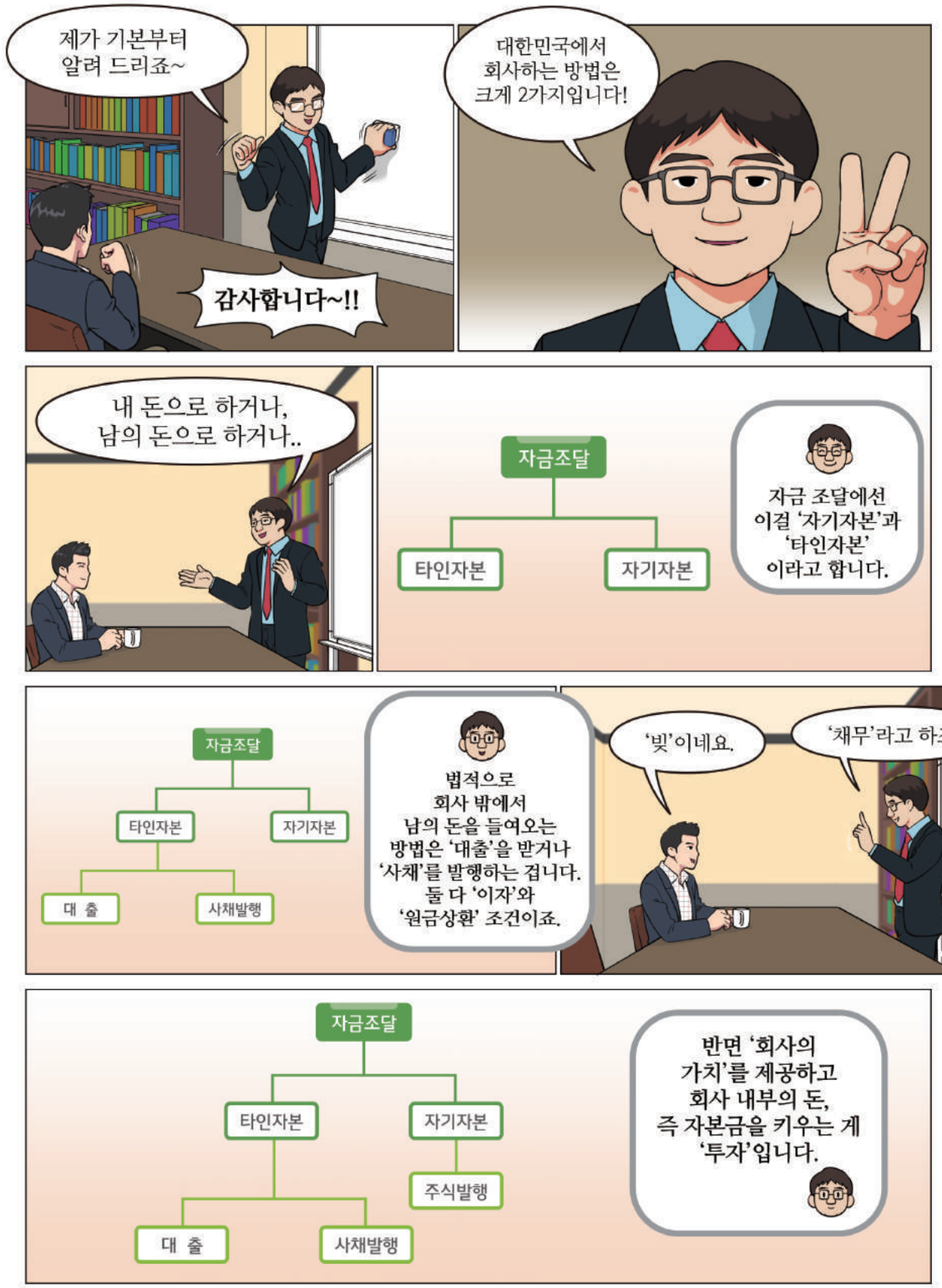
제가 기본부터
알려 드리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회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내 돈으로 하거나,
남의 돈으로 하거나..
자금조달
타인자본
자기자본
자금 조달에선
이걸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이라고 합니다.
자금조달
타인자본
자기자본
대 출
사채발행
법적으로
회사 밖에서
남의 돈을 들여오는
방법은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둘 다 '이자'와
'원금상환' 조건이죠.
'빚'이네요.
'채무'라고 하죠.
자금조달
타인자본
자기자본
주식발행
대 출
사채발행
반면 '회사의
가치'를 제공하고
회사 내부의 돈,
즉 자본금을 키우는 게
'투자'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제공해요?
회사의 주식을 쪼개주는 거죠.
주식은 '경영참여권리'이자 '수익배분'의 기준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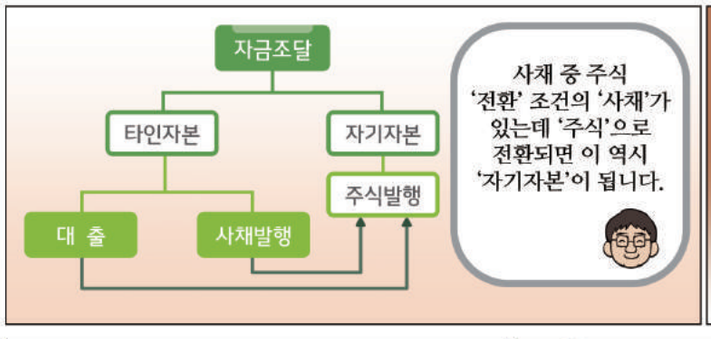
자금조달
타인자본
자기자본
주식발행
대 출
사채발행
사채 중 주식 '전환' 조건의 '사채'가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되면 이 역시 '자기자본'이 됩니다.

흠, 어차피 주식을 쪼개가는 조건이니까...

이런 정보들이 정리된 문서가 바로 '법인등기부등본'이죠.

혹시 가져오셨나요?
넵!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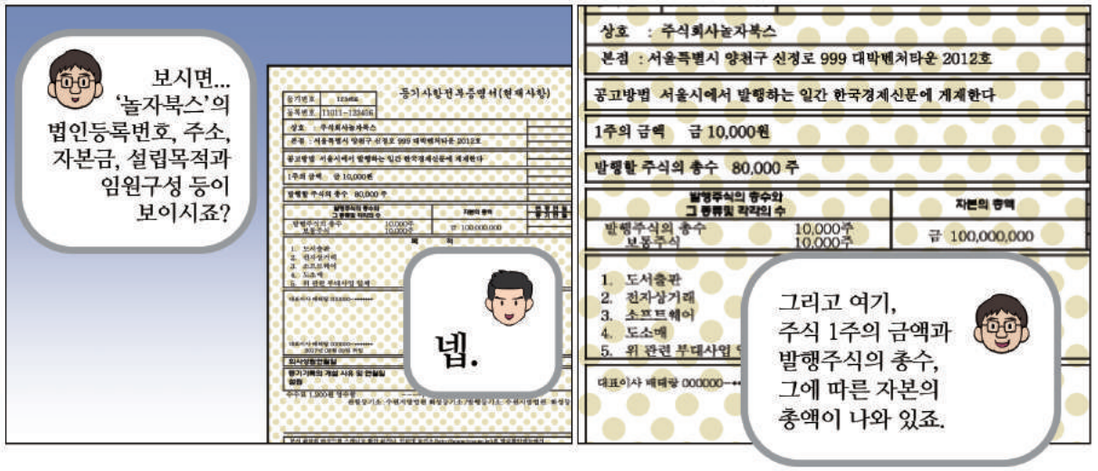
보시면... '놀자북스'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본금, 설립목적과 임원구성 등이 보이시죠?
넵.
상호 : 주식회사놀자북스
본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999 대박벤처타운 2012호
공고방법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주의 금액 금 10,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
1. 도서출판
2. 전자상거래
3. 소프트웨어
4. 도소매
5. 위 관련 부대사업
그리고 여기, 주식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의 총수, 그에 따른 자본의 총액이 나와 있죠.

1주 = 10,000원
10,000원 x 10,000주 = 100,000,000원
'놀자북스'의 경우 1주 금액이 1만 원, 발행 주식 수가 1만 주, 그래서 자본금이 1억 원인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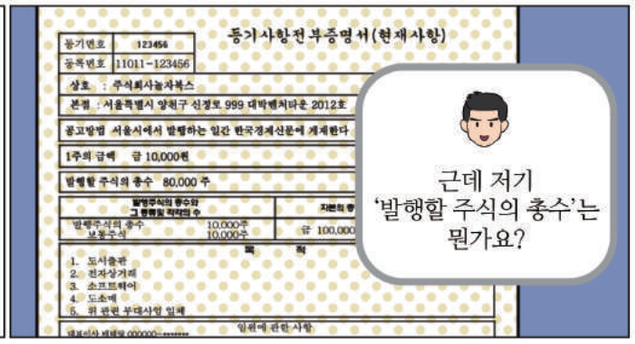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등기번호 123456
등록번호 11011-123456
상호 : 주식회사놀자북스
본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999 대박벤처타운 2012호
공고방법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주의 금액 금 10,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10,000주
금 100,000
1. 도서출판
2. 전자상거래
3. 소프트웨어
4. 도소매
5. 위 관련 부대사업 일체
근데 저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뭔가요?

회사 정관에 있는 주식 발행 최대치예요.
아, 맞다!

근데 혹시 주식 발행 수가 부족하면...

주식을 쪼개다 보면 최대치를 넘을 수 있죠.

그땐,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꿔야겠죠.
아하!!
딱

커피 더 드릴까요?
네, 많이요!
아직은 어렵거나 하진 않으시죠?
네, 아직까진요...
조르르르

자, 이어서~ 투자자에게 주식을 쪼개주면 뭐가 바뀔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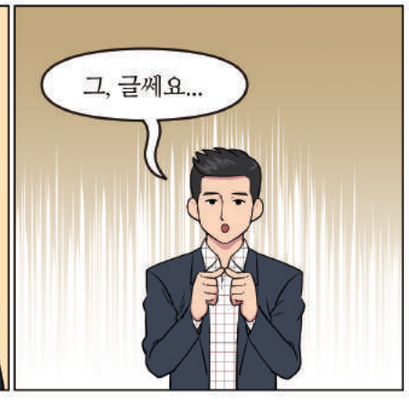
그, 글쎄요...

회사의 '지분율'이 바뀌죠~ 투자자에게 지분만큼 회사의 권리를 나눠야 하니깐.
지분율
어... 얼마나 나눠줘야 하나요?
배 대표님 이번에 얼마를 투자받기로 얘기됐나요?
담당자 말로는... 2억 원 정도?
그럼 함께 지분율 변화를 계산해볼까요?
벤처캐피탈이 10배수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죠. 그 말은 '놀자북스'의 가치를 주식액면가, 즉 1만 원의 10배로 쳐주겠단 뜻입니다.
1주 = 10,000원
10,000원 x 10,000주 = 100,000,000원
예) 자본금 1억 원인 '놀자북스' 에 10배수로 2억 원 투자하는 경우
▪주식액면가 : 법인등기부등본 상 1주의 가격 → 10,000원
▪10배수 투자 : 주식액면가의 10배 가격으로 투자 → 100,000원
그럼 1주에 10만 원?
네, 1주에 10만 원이면 2억 원일 때 몇 주가 되죠?
2억 원 / 10만 원 = 2천 주
흠, 2천 주요!
그럼 투자 후 총 발행주식의 수는?
1주 = 10,000원
10,000원 x 10,000주 = 100,000,000원
예) 자본금 1억 원인 '놀자북스' 에 10배수로 2억 원 투자하는 경우
▪주식액면가 : 법인등기부등본 상 1주의 가격 → 10,000원
▪10배수 투자 : 주식액면가의 10배 가격으로 투자 → 100,000원
▪신규발행주식 : 200,000,000원 / 100,000원 = 2,000주
10,000주 + 2,000주 = 12,000주 [총 발행주식]
기존 1만 주에, 추가된 2천 주를 합친 1만2천 주죠.
그렇죠~ 1만 2천 주 중 2천 주를 가졌으니 투자자의 지분율은... 약 16.7%군요.
지분율 : (2천 주 / 1만 2천 주) x 100 ≒ 16.7%
100% →
100% - 16.7% = 83.3%
그럼 저는 100%에서 83.3%로 지분율이 줄었네요.

근데... 자본금 1억 원에 2억 원이 들어와서 3억 원이 됐는데 1만 2천 주면 계산이 안 맞지 않나요?
1주 = 10,000원
10,000원 x 10,000주 = 100,000,000원
예) 자본금 1억 원인 '놀자북스' 에 10배수로 2억 원 투자하는 경우
▪주식액면가 : 법인등기부등본 상 1주의 가격 → 10,000원
▪10배수 투자 : 주식액면가의 10배 가격으로 투자 → 100,000원
▪신규발행주식 : 200,000,000원 / 100,000원 = 2,000주
10,000주 + 2,000주 = 12,000주 [총 발행주식]
▪자본금 : 12,000주 x 10,000원 = 120,000,000원
cf) 자본잉여금 :
300,000,000원 - 120,000,000원 = 180,000,000원
자본금은 '액면가 × 주식 수'니까 1억 2천만 원입니다. 대신 남은 1억 8천만 원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되죠.
아하~!
하지만 만약 투자자가 2배수 투자를 한다면?
슥
2배수 투자 : 1만 원 x 2 = 2만 원
신규발행주식 : 2억 원 / 2만 주 = 1만 주
총 발행주식 : 1만 주 + 1만 주 = 2만 주
지분율 : (1만 주 / 2만 주) x 100 = ?
2배수면 주당 2만 원, 2억 원이면 1만 주에, 지분율이...
쿠쿵
놀자
BooKs
쩌억
50%?!!
배 대표님의 경우, 주당 인수가액이 2만 원이하면...?
경영권이 위험해지겠네요! 정신이 번쩍 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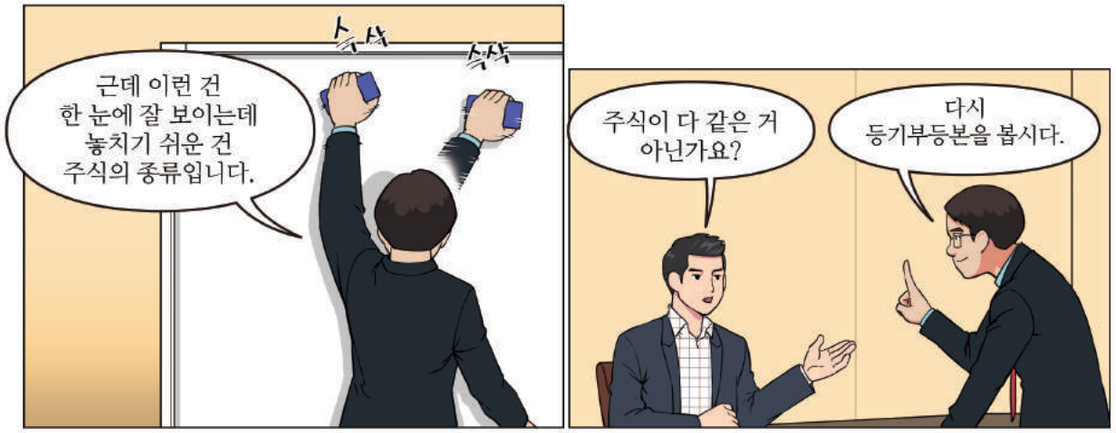
삭삭
삭삭
근데 이런 건
한 눈에 잘 보이는데
놓치기 쉬운 건
주식의 종류입니다.

주식이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다시
등기부등본을 봅시다.

등기번호 123456
등록번호 11011-123456
상호 : 주식회사놀자북스
본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999 다
공고방법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
1주의 금액 금 10,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 주
발행주식의 종수와 그 종류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10,000주
금 100,000,000
1. 도서출판
2. 전자상거래
3. 소프트웨어
4. 도소매
5. 위 관련 부대사업 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배배랑 000000-*******
'놀자북스' 경우,
1만 주가
다 '보통주'죠?
그렇네요?

보통주가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그럼 투자자에게 어떤 권리가
약속됐을까요?
기본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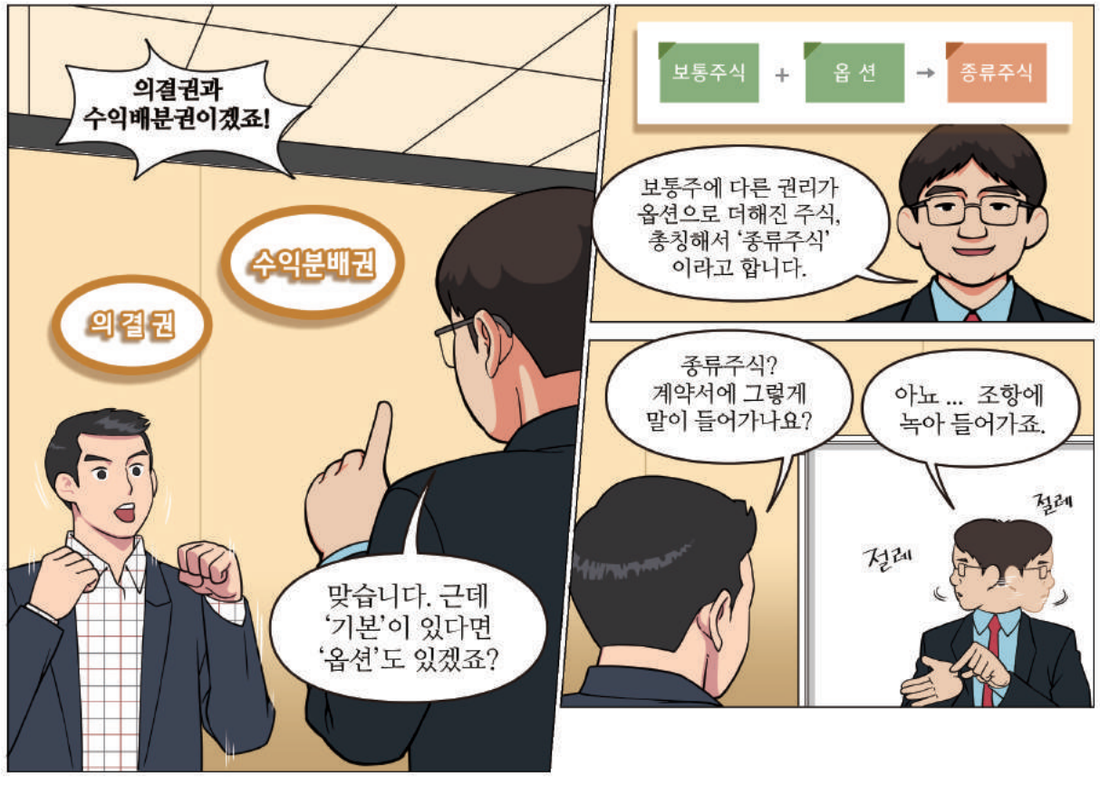
의결권과
수익배분권이겠죠!
수익분배권
의결권
맞습니다. 근데
'기본'이 있다면
'옵션'도 있겠죠?
보통주식 + 옵 션 → 종류주식
보통주에 다른 권리가
옵션으로 더해진 주식,
총칭해서 '종류주식'
이라고 합니다.
종류주식?
계약서에 그렇게
말이 들어가나요?
아뇨 ... 조항에
녹아 들어가죠.
절레
절레

종류주식의 예를
들어볼까요?
'상환권', '전환권', '우선권'을
가진 주식이라면?
상환권 + 전환권 + 우선권 = ?
상환권 + 전환권 + 우선권 =?
?
상환, 전환,
우선... 주?

네, RCPS라고 불리는
상환전환우선주죠. 요즘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거의
상환전환우선주에요.
오호~
이런 권리들은 다 투자자에 유리한 권리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기업 입장에선 불리할 수 있단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상환전환우선주)

일단 우선권
몇 가지를 짚어드리죠.
'이익배당우선권', 말 그대로
'이익배당'을 보통주의
주주보다 '우선'해서
받는 권리에요.
이익배당우선권
이익배당우선권
잔여재산분배우선권
'잔여재산분배우선권',
만에 하나 기업이 파산해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잔여재산'을
주주들에 '분배'하는데
그때 보통주의 주주보다
'우선'해서 받는 권리에요.
흠, 내가 보통주를
가졌으니
나보다 우선이겠군...

▌리픽싱(Refixing): 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 주식수가 달라지는 것.

※ 초기기업을 위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 핸드북 29p 사례 참조

법인등기부등본에 담긴 정보

회사의 기본정보가 정리된 문서, 법인등기부등본!
과연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등기번호: 등기기록 개설 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

등록번호: 법인의 고유등록번호

상호, 본점 주소: 상호, 본점 주소

공고방법: 정관에 기재된 공고방법. 변경 가능

1주의 금액: 주식 1주 거래대금. 액면분할로 변경 가능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정관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 최대치. 정관 변경으로 변경가능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발행된 주식의 수량과 종류, 회사 자본금 기재

목적: 회사 영업목적 기재란. 목적 추가 또는 삭제 시 변경 기재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취임, 사임, 해임, 사망, 임기만료 등 기재. 임원의 성명, 주민번호 기재되며 대표이사 경우 주소도 기재.

기타사항: 각 란에 기재할 수 없는 모든 사항을 기타사항에 기재.
- 우선주식의 내용(각 주식 내용)
- 흡수합병, 회사분할, 주식소각
- 명의개서대리인
-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
- 해산 및 청산 관련 내용
- 회생 및 파산 관련 내용 등

전환사채: 전환사채 주식전환 및 상환 관련 내용 기재

주식매수선택권: 정관에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내용 기재.(주로 스톡옵션 관한 내용)

회사성립연월일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회사 최초 설립 날짜 기재란과 등기기록 개설 사유 및 등기한 날짜 기재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번호	000888
등록번호	123456-0007878

상 호	주식회사 나잘남자 — . . 변경 / . . 등기
본 점	서울시 벤처구 대박1로 으라차차벤처타운 1001호 — 2012.06.29 도로명주소 / 2012.06.29 등기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으뜸일보에 게재한다 — . . 변경 / . . 등기
1주의 금액	금 5,000 원 — 2018.05.03 변경 / 2018.05.03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 주 — 2018.05.03 변경 / 2018.05.0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40,000 주		2018.12.04 변경
보통주식	40,000 주	금 200,000,000 원	2018.12.06 등기

목 적

1.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1997.[redacted] 변경 1997.[redacted] 등기>
2. 통신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1997.[redacted] 변경 1997.[redacted]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사외이사 [redacted]-*******
2010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취임 2010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등기
2013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중임 2013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등기
2016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중임 2016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등기

감사위원 [redacted]-*******
2013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취임 2013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등기
2016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중임 2016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등기

대표이사 [redacted]-******* 정기도 [redacted]
2018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취임 2018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등기

기 타 사 항

1. 1988년 [redacted] 를 흡수합병.
2. 우선주식의 내용
(1) 우선주식은 비누적적이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함.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하여 년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함.
(3)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 환 사 채

제[redacted]회 무보증 해외 전환사채
2002년 [redacted] 전부 주식전환
< 2002 년 [redacted] 등기 >

주 식 매 수 선 택 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상법 제542조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회사성립연월일 19[redacted] 년 01 월 [redacted]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로부터 이기
2001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등기

이외에도 본점의 경우 지점 관련 사항이, 지배인이 있다면 그 관련 사항이 기재됩니다.

투자유치 전후 지분율 계산

자, 옆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아래의 투자유치 계약서를 보고 대표이사 '나잘난'의 투자유치 전후 지분율 변화를 계산해볼까요?
(단, 현재 대표이사 보유 주식은 3만 주, 사외이사 보유 주식은 1만 주)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제1조 (신주의 발행 사항)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한다 (이하 투자자가 인수한 종류주식을 " 본건 주식 " 이라고함).

1.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권주식수) : 10,000주
2. 기 발행주식의 총수 : 기명식 보통주 40,000주
3. 금회의 신주발행 내역:
   가.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종류주식 10,000주
   나. 1주의 금액(액면가): 금 5,000원
   다. 본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인수가액) : 금 50,000원
   라. 본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 : 500,000,000원

① 투자유치 전 지분율 계산

$$\text{지분율}(\%) = \frac{\text{보유한 주식의 수}}{\text{발행주식의 총수}} \times 100\% = \frac{30,000}{40,000} \times 100\% = 75\%$$

② 투자유치 후 지분율 계산

$$\text{발행주식의 총수}(주) = \text{기 발행주식의 총수}(주) + \text{신주}(주) = 40,000주 + 10,000주 = 50,000주$$

$$\text{지분율}(\%) = \frac{\text{보유한 주식의 수}}{\text{발행주식의 총수}} \times 100\% = \frac{30,000}{50,000} \times 100\% = 60\%$$

③ 전환우선주의 전환비율 조정(리픽싱, Refixing) 적용 예시

투자자는 투자 시 주식회사 나잘남자의 성장 전망을 IR 설명을 통해 10년간 10배수 이상으로 판단하고 투자계약을 하였으나, 2년 후 회사성장율은 1.5배수에 불과했다.
이에 투자자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당 평가가액의 70%가 되도록 전환(리픽싱)을 요청했다.

$$\text{변경되는 주식 수}(주) = \frac{\text{투자금(본건주식의 총 인수대금)}}{\text{리픽싱 적용된 1주당 발행가액}} \quad \frac{500,000,000}{50,000 \times 70\%} = 14,286주$$

$$\text{발행주식의 총수}(주) = \text{기 발행주식의 총수}(주) + \text{변경되는 주식 수}(주) = 40,000주 + 14,286주 = 54,286주$$

$$\text{지분율}(\%) = \frac{\text{보유한 주식의 수}}{\text{발행주식의 총수}} \times 100\% = \frac{30,000}{54,286} \times 100\% = 55.2\%$$

Chapter 2.

계약에서 입금까지(1) : 도장 찍고 시작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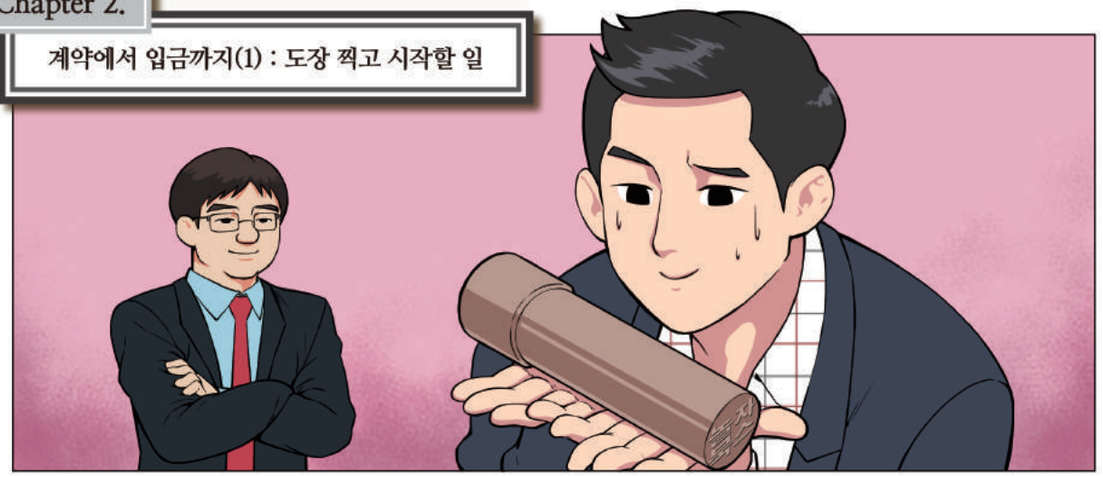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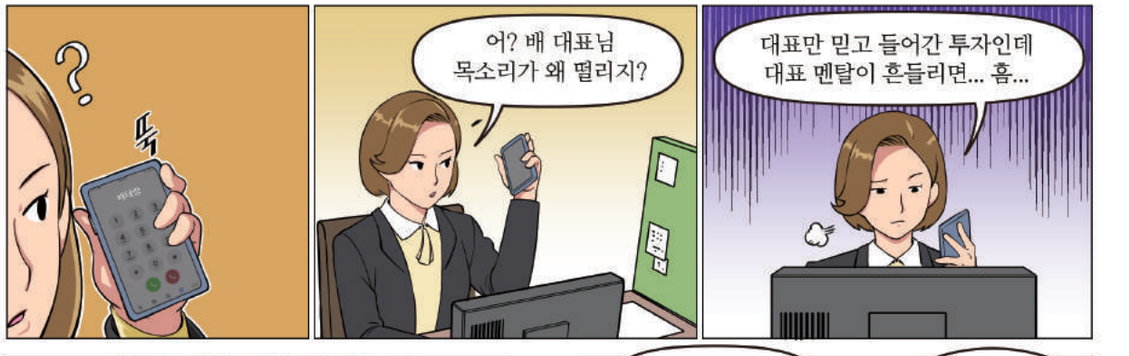

위이이잉
변호사님, 이해관계인 씨가 누구죠?
이계인 씨 동생인가...
배태랑 왕자님!! 정신 차려십쇼!!
괜찮으시면 제가 먼저 볼게요.
네, 전 좀 쉴게요.
흠~
배 대표님, IR 발표 정말 잘하셨나 봐요?
네? 왜요?
벌떡
초기기업 투자계약 권고안에 가깝게 작성돼 왔어요.
오랜만에 이런 투자계약서 보니 훈훈하네요~
그, 그래요?!!!

'상환권' 조항도 없잖아요!
상환권은 또 뭔데요?
상환권 조항이 있으면, 계약 기간 중 투자자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사고, 이자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상환권
이 계약서에는 '전환권'과 '우선권'만 있거든요. 벤처캐피탈에서 '전환우선주' 계약서를 내밀었다는 건 그만큼 배 대표님과 '놀자북스'를 신뢰한단 뜻이죠.
그, 그래요?
어, 5배수로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네요!
5배수 투자 : 주당 5만 원
투자금 대비 주식 수 : 2억 원 / 5만 주 = 4천 주
총 발행주식수 : 1만 주 + 4천 주 =1만 4천 주
지분율 : (4천 주 / 1만 4천 주) x 100 ≒ 28.6%
28.6% 정도!
그럼 지분율은?
감사합니다.
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며 가죠.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며칠 뒤, 투자계약서 협의를 위해
이 변호사님과 벤처캐피탈에 갔다.

한울벤처캐피탈

그런데 안 과장의 표정이 어두웠다.

흠...

며칠 전 협의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안 과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협의요?

네? 네...

난 온갖 고민에 빠졌다.
혹시 협의 얘기에 기분이 상한 걸까?
그럼 투자계약서에 협의도 못 한단 말인가?

턱

그러니까 일부 조항을
조정해 달라는 뜻인가요?

네, 그 정도는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흠...

엇?!

네, 좋습니다.

사실,
근래 배 대표님
애티튜드가
걱정이었습니다.
뭔가 들떠있는
모습이랄까.

가끔 투자유치 후 들떠
사업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담당자 입장에선
불안하고... 곤란합니다.

?

끄덕
끄덕

그런데 배 대표님께서는
더 깐깐해져서 오셨어요~

담당자 입장에서 오히려 안심됩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의 조정이 더 있었지만
안 과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협의에 이를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네, 추진해볼게요~

드디어 투자계약 당일. 너무 서둘렀는지 약속 시간 30분 전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

멍~

너무 일찍 왔네...

변호사님... 저... 떨고 있어요?

아뇨...

그게 겁나요... 떨고 있을까 봐...

좋은 자리인데 왜 그러세요~

다만, 그 도장의 무게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도장의 무게요?

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도장을 날인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꿀꺽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덕

좋습니다.

벌떡

쿵

서명

기대하겠습니다!

3주에 걸친 협의 끝에 투자계약 체결 회의는 잘 마무리됐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울벤처캐피탈

이 변호사님, 저녁 시간 어떠세요? 제가 한잔 쏘겠습니다!

그럴 시간 있으시겠어요?

투자금 들어오기 전에 '선행조건'을 충족시키셔야죠?

제3조 투자의 선행조건

헉

그 말인즉?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당연히 투자가 안 들어오죠.

투자금군

미안, 배태랑 군이 준비가 안 되면 난 올 수 없어~

허걱!

투자계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두

두

두

저기요... 배태랑씨?

종류주식의 종류와 계약서 표기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의결권과 수익 배분권만 가진 주식이 '보통주', 보통주에 옵션이 추가된 주식들이 통칭 '종류주식'입니다.
종류주식의 대표적 옵션 조항인 '우선권', '전환권', '상환권'이 투자 계약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볼까요?

① 이익배당우선주와 관련 조항

제*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5%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는다.

말 그대로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는 조항입니다. '참가적 우선주'란 영업연도 이익이 초과 달성 됐을 경우 일정률(위 경우 5%)의 우선 배당을 받고 추가 배당이 가능한 잔여이익의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적적 우선주'란 영업연도 이익이 부족해서 우선 배당을 못 받으면 그 부족분을 누적해 다음 해에 보상받는 권리입니다.

② 잔여재산배분우선주와 관련 조항

제*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 동일하다.
② 본건 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가 문을 닫을 때, 회사의 잔여재산을 보통주의 주주(=대표 등)보다 본건 주주(=투자자)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미지급 배당금이 있다면 함께 산정하여 가져갈 수 있고(①항), 우선 배당받은 후에도 잔여재산이 있다면 보통주의 주주와 함께 추가 배당에 참여하여 더 받을 수 있습니다(②항).

③ 전환주와 관련 조항

제*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 완결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가 본건 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3. 본건 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그 비율에 따라 무상 지급받는다.
4.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전환주는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주식입니다.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 보통주 1주'로 예정된 기한(위 경우 10년) 내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도 자동 전환됩니다. 그런데 위 조항에 '종류주식 1주 = 보통주 1주' 적용 예외가 되는 조건들이 조항에 추가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리픽싱(Refixing)' 조항이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주당 평가가액의 70%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식의 문구로 들어갑니다.(위 예시 조항은 스타트업 권고 기준안으로 해당 조항이 빠졌습니다.)

④ 상환주와 관련 조항

제*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거래완료일 다음 날(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이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④ 상환가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거래완료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거래완료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미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대부분 벤처캐피탈의 투자계약서는 대개 '상환전환우선주'로 위와 같은 '상환권'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위 경우 3년) 이후부터는 본건의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까지 투자자는 언제든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①항), 회사는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②항)는 조항입니다. 상환가액은 이자 합계액(위 경우 연 복리 6%)으로(④항) 지연 시 지연배상금(위 경우 연 복리 20%)도 지급(⑤항)해야 합니다. 또, 상환청구 시점(위 경우 3년) 이전이라도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계약위반 소지가 있으면 언제든 상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⑥항). 회사 입장에서는 상환 시점이 늦을수록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Chapter 3.

계약에서 입금까지(2) : 바뀐 등기부등본을 받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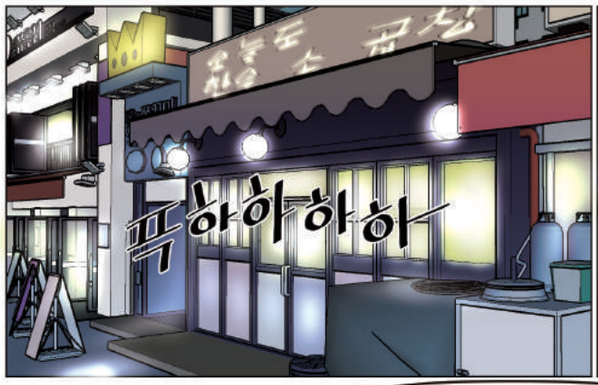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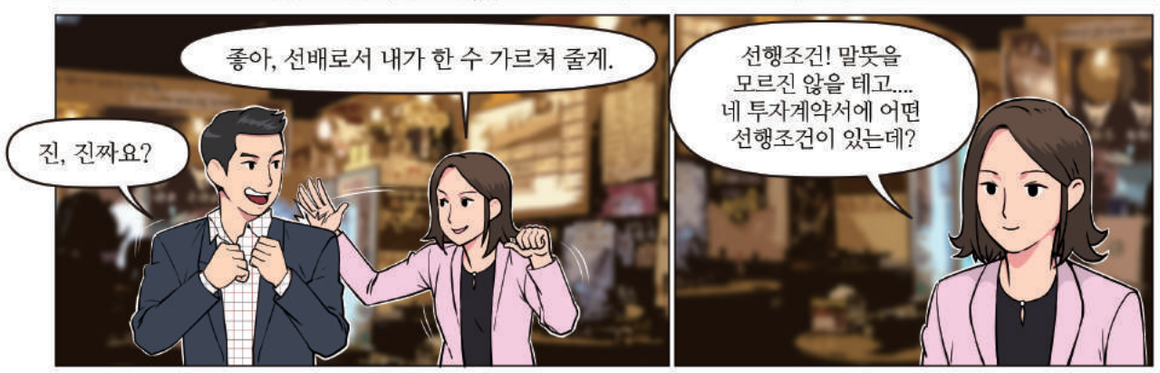

다음은 정관 변경을 위한 절차...

제3회 놀자북스 임시주주총회

지금부터 제3회 놀자북스 임시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투자유치를 위한 정관 변경입니다.

회의록 작성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주주가 나뿐이라 주주총회가 썰렁하군~

휑

제3회 놀자북스 임시주주총회

근데 어떻게 하랬더라...

3일 전,

회사의 정보가 정리된 문서가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했죠?

그럼, 투자유치로 회사 상황이 바뀌면?

법인등기부등본도 바뀌어야겠죠...?

뭘 근거로 바꿀까요?

그, 글쎄요...

바로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된 '정관'입니다.

국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고쳐 시행하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고 고쳐 시행합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관변경이 선행조건으로 왔군.

근데 어떡하지? 잘 들어 둘걸...

털푸덕

똑 똑

맞다! 신임 감사님 오시기로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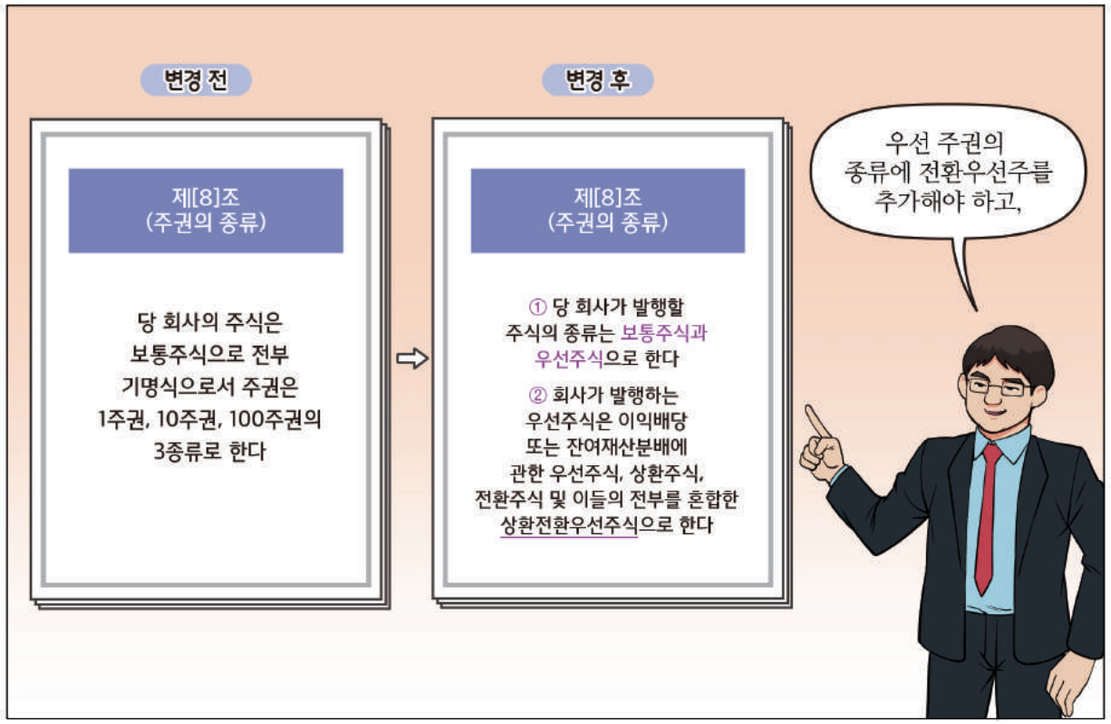

제[8]조의 2 (상환전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으로
상환되고 발행예정 주식총수 범위내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가지며, 우선주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의
[redacted]

관련 조항도
추가해야 합니다.

제[10]조 (신주인수권)

7. [redacted]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redacted]

드디어 약속된 투자금 납입일...
아직 시간이 안 됐나?
흠...
아, 1분이 1년 같아!
헛!
깨 Talk~!!
[Web발신]
200,000,000원이 입금됐습니다
오~!
아싸~ 이제 됐어!!
No, I'm Still Hungry~!
놀자 BooKs N
투자금고
me too~!
투자금 받으면 후행 의무부터 해요!
맞다! 변호사님이 그걸 잘해야 신뢰가 쌓인다셨지!

난 바로 등기부등본 변경절차에 들어갔다.
신청서 다운~
위이잉
인터넷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스캔해서 첨부하고,
관할 등기소로 향했는데...
가능한 빨리 새 법인등기부등본 발행해주세요.
저... 고객님... 그것도 주셔야죠?
!!
네, 그거요?
그거라니? 뭘 빼먹은 거지? 설마 그걸 몰라서 등기변경 안 되고 투자금 뱉는 거 아냐?!!
수수료요! 수수료 주셔야죠~
아~ 난 또!!!
우여곡절 끝에 초기 사업 준비자금이 마련됐다.
휴~ 끝났다!
TAKE OUT
힘들게 얻은 기회인 만큼 꼭 성공하겠노라 다짐했다!
놀자북스 군~ 앞으로도 꽃길만 예약이야!
투자금고
놀자 BooKs N

회사 정관의 의미와 변경

투자계약 후 입금 전까지 회사가 선행적으로 처리할 일들을 옆처럼 투자계약서에 '투자의 선행조건' 항목으로 넣습니다. 주로 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는데 법적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인데요

제[*]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의한 투자자의 의무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3.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회사 내부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4.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건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7.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경영상태 또는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이 없을 것

이때,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 정관에 의해 제3자 배정이 안 되거나 종류주식 발행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성격을 정리한 문서로 국가로 치면 '헌법'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법에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약을 맺어야 한다면 헌법을 수정하고 조약을 맺는 것이 올바른 절차겠죠! 정관 변경은 그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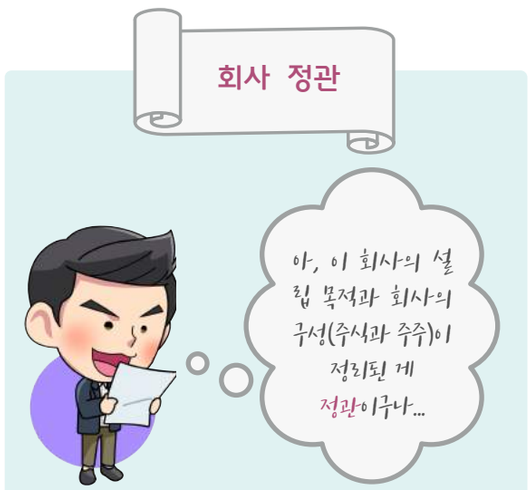

정관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상호, 설립 목적,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등

제2장 주식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총수, 주식종류, 주권종류, 주식양도 제한, 주권재발행 등

제3장 주주총회
소집, 의장, 결의, 의결권 대리행사, 총회의 의사록 등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인원수, 선임 방법, 임기, 이사회 소집, 결의, 회의록 작성, 대표이사 선임, 업무,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등

제5장 계산
영업한도(계산기간), 총회 보고 재무자료, 이익금 처분 방법, 이익 배당 방법 등

부칙
기타 법적 필요 항목

주식회사의 정관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며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상법 제416조에 따라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이를 정관에 반영시킵니다. 정관 변경 절차와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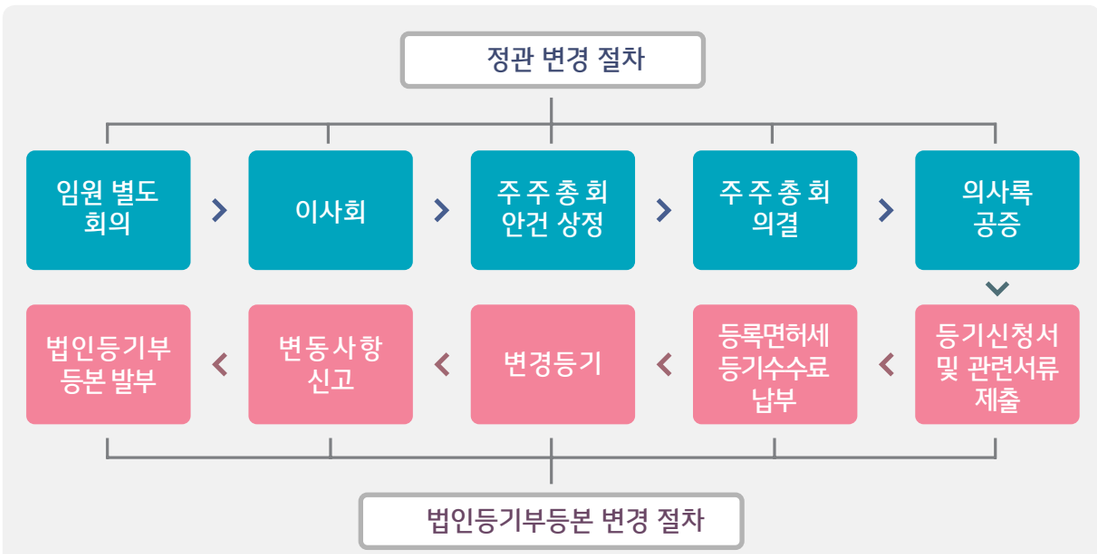

Chapter 4.

투자금, 함부로 썼다가 큰코다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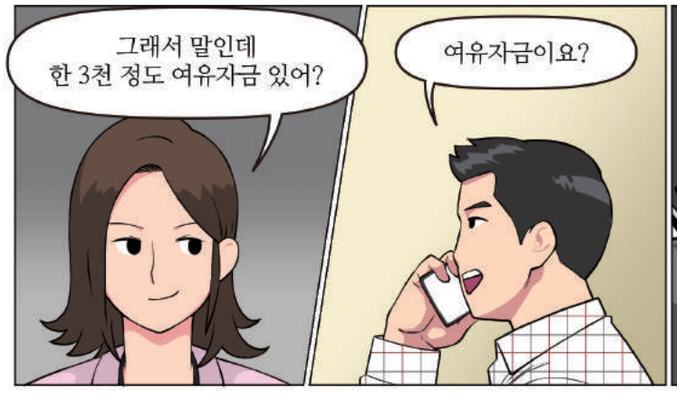

2년 넘게 데스밸리를 헤맨 나에게 그런 여윳돈이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오죽 급했으면 나한테 연락했을까 싶었다.

선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아직 은행에 잠들어 있는 투자금이 생각났다.

씨앗은행

투자금

굴~ 굴~

앗~! 투자금!!

선배, 될 것도 같아요!

그래? 고맙다, 배태랑!

내일 점심때쯤 연락할게.

알았어요, 선배~

선배 잘 풀리면 그 신작 놀자북스에도 서비스해달라고 해야지~

으악, 사레! 켁켁!!

'호사다마'라고 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촉이 발동했다.

뭐지, 이 불길한 기분은....?

다음날 일찍 난 이 변호사님을 찾아갔다.

변호사님!

법무법인 다반사

돈이요... 바로 받긴 할 텐데 괜찮겠죠?

흠...

변호사님도 아시잖아요? 은혜 선배 확실한 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투자금은 계약서에서 지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돼요.

네에?!! 바로 채워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은행 기록이 남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 계약서에 나온 투자금의 용도 조항을 살펴보죠.

보신대로 투자금의 용도는 제한되어 있어요.

제[6]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그렇네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빌려줘선 안 돼요. 만약 이를 어겼다간....

어겼다간?
계약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될 수도 있고요.
허걱!!
놀자북스 때문에 왔는데 딴 일 시켰어요!
당신을 업무상 횡령죄로 체포합니다!
투자금은
잘못했어요, 흑흑!
어, 어떡하죠! 변호사님!
이건 제가 도와드릴 영역이 아니네요.
그 길로 난 은혜 선배를 찾아갔다.
여기요, 선배
어!
내가 점심 먹고 전화한다니까 왜 직접 왔어?
실은 그게...
미안해요, 선배! 돈 못 빌려드릴 것 같아요.
응?

선배한테 중요한 타이밍인 거 알고, 선배한테 늘 고맙지만...
빌려주려던 돈이 투자금이라 함부로 쓸 수가 없대요.
그것 때문에 온 거야?
네.
내가 너만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슈슉슉슉
부들부들
미안해요.
푸하하, 역시 투자유치 왕초보야!
퍽
퍽
퍽
선배?!!
하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애가 돈 있다 했을 때부터 이상하더라니. 그런 돈이었으면 애초에 없다고 했었어야지~
미안해요.
괜찮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다 용서할게. 밥이나 먹으러 가자~
선배의 배려로 나의 실수는 무사히 넘어갔다. 하지만 다음엔!!
서, 선배? 설마 판권 딴 거야?
당연하지! 난 얼굴이 신용이잖니~

투자금 용도와 제한

제[*]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①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금이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투자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계약을 통해 회사로 들어온 투자금의 용도는 처음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 회계 및 감사업무 관련 조항은 따로 두는 경우도 있음

회사 운영자금은 자금 운영규정에 의해 사용하거나 운영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모든 경우 투자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만약,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금을 용도 이외로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

형법 제40조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약 위반 시 투자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 이외에 사안에 따라 형사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사 사건으로만 진행되면 고소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면죄받을 수 있으나,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합의를 해도 위와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1.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나 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모욕죄,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이 있음.
※ 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경찰의 인지나 검찰의 인지로 수사나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할 수 없는 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과실치사 등이 있음.

기술의 이전, 양도, 경업 및 퇴사 등

투자금 외에도 투자계약서에 용도 혹은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의 경우, 대표나 팀원 등 인력을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기술의 이전, 양도, 경업 및 퇴사 등에 대한 제한 조항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제[*]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경업 및 퇴사 등 제한)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 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2년간 회사의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2년간 회사에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퇴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조항

제[*]조 (보고 및 자료 제출)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의 경영상황 또는 재무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2. 반기보고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 분기보고서: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회계 및 감사업무 관련 조항이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항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위와 같이 '보고 및 자료 제출' 항목으로 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의무 조항이 초기 벤처기업에게 부담이 큰 만큼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한해서만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의무 위반으로 제재받는 경우가 많은 건 아니나 계약서상 의무이니 부담이 될 경우 투자자와 미리 상의하고 조정하여 축소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솔루션입니다.

Chapter 5.

2차 투자유치, 이것이 먼저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은혜 선배와의 일이 잘 해결된 후
'놀자북스' 앱 개발에만 열중한 결과....

대박이 났다!

너무 뜨거워
게시판 반응을
볼 수가 없네~

놀자 BooK

광고 포함·인앱 구매 제공
사용 중인 모든 기기와 호환되는 앱입니다.

다운로드

책벌레님의 댓글 독서 배틀! 대박 아이디어~!"

북디스아웃님의 댓글 독서로 게임하고, 서평 써서 레벨 업 하는 세상이 오다니!"

서왕에미넴님의 댓글 책 보고 뽐내는 게 너무 즐거워요!"

책수저님의 댓글 난 벌써 우리 독서방의 레벨 성주임!"

출판인의 밤

그리고 이 성공은 내게 또 다른 기회로 이어졌다.

출판인의 밤

내가 이런 델 오다니...

연구실에만 틀어박힌
대표에겐 기회가 오지 않아~

놀자북스를 키우려면
네가 경영인으로
거듭나야 해!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할게요!

은혜 선배의 도움으로
사업에 필요한 인맥을
넓힐 기회도 가졌다.

태랑아, 이리 와!

아, 선배 쫌~

인사드려, 레자코믹스
진지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놀자북스
배태랑이라고 합니다!

꾸벅

어머? 요즘 핫한 놀자북스
대표가 이렇게 잘생긴
분이셨다니!

헛, 부끄럽습니다!

헐, 아니라곤 안 하네?

앞으로 저희
놀자북스와 거래해주세요!
만족하실 겁니다!

어머,
역시 젊은 기업인답게
시원시원하네~ 호호!

하지만 그렇게 1년이 지나자...

휴~ 피곤해...

어디... 반응 좀 볼까?

1인 기업의 한계가 명확해졌다.

놀자 BooK

광고 포함 인앱 구매 제공
사용 중인 모든 기기와 호환되는 앱입니다.

다운로드

일단까고본다님의 댓글 편리한데 디자인 구려요~"

독서왕책수미님의 댓글 서버 업데이트 좀 해요! 출퇴근 시간에 서버가 불안해요~"

각성왕김각성님의 댓글 30분 쓴 서평을 날렸으~ 개발자 각성 좀!"

디자인팀과 서버 관리팀이 필요하고... 콘텐츠 수급 담당자도 있어야겠어...

인력은 퇴사 동료들 중 물색 된 사람이 있는데, 투자금이 개발비로 거의 소진된 상황...

광고수익은 회사운영비로도 아슬아슬, 계획된 업데이트도 차일피일 밀리고 있었다.

흠...

배태랑 군, 언제까지 날 여기 가둬둘 거야?

미,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이대론 안 되겠어! 2차 투자유치로 회사를 키우고 사람도 뽑아야지!

벌떡

10억 정도 투자를 목표로 벤처캐피탈 리스트를 작성해

사업제안서를 들고 각각 방문했다.

누리벤처

그중 진 대표님께 소개받은 누리 벤처캐피탈에서 연락이 왔다.

누리 벤처캐피탈 신중한 팀장입니다.

아, 네!

놀자북스 투자에 관심이 있어, 추가 미팅을 진행해보고자 하는데...

서평 쓰고 포인트 받아 e북을 구매합니다!

가능하신가요?

당연하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IR도 무사히 통과하고,

그러~쭤~!!

벌

떡

마침내 투자의향서 협상 단계로 넘어왔다.
사실상 2차 투자유치의 8부 능선을 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 또 서늘한 촉이 왔다.

하하하

엇, 이번 투자유치에서 내가 놓친 게 있나?

난 다시 이 변호사님을 찾아갔다.
변호사님, 너무 오랜만에 왔죠?
잘하셔서 제가 다 뿌듯한 걸요~
이번에 2차 투자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투자유치에 미숙해요. 혹시 놓친 건 없는지 도움받으려고요...
여기, 이번 투자계약서 초안입니다.
아, 그것보다...
1차 투자계약서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왜요?
2차 투자유치 중 1차 투자자 권리가 침해되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8]조 투자자의 동의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1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건 주식의 발행가격 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 및/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보이시죠? '투자자의 동의권' 관련 조항입니다.
앗, 왜 이걸 놓쳤지!

증자는 투자자 '사전 서면 동의' 사항에 해당하고 계약한 대로 1주 전까지 '사전 서면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됩니다.
도리
도리
이걸로 소송 벌어지면 2차 투자유치도 당연히 어렵겠죠?
후덜덜
그렇죠...!!
또, 1차 투자자가 '주주간 합의서' 작성을 요청할 겁니다.
네? 그건 1차 투자계약서에 있잖아요?
그건 배 대표님과 1차 투자자, 즉 두 주주간 합의서잖아요.
아하!
2차 투자 후엔 배 대표님, 1차 투자자, 2차 투자자로 바뀌니 1차 투자자와 2차 투자자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해요
· 주주간 합의서 ·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동반매도요구권
주식매수청구권
주주간 합의서에는 대개,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관련 조항,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 참여권 동반매도요구권과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이 변호사님이 절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한 게 있나요?

난 바로 1차 투자자인 한울 벤처캐피탈 안 과장님께 연락해

안 과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렸네요...

사전 서면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감사합니다.

네, 처리해드리죠!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주주간 합의서 작성을 요청했다.

단, 주주간 합의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으니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2차 투자 유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찰칵

휴~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무실도 옮기고 사람도 뽑아야겠어요!

그러셔야죠~

그리고 주주간 합의서 작성을 위한 미팅 날...

이쪽은 한울 벤처캐피탈의...

역시!

1차 투자자가 한울 벤처캐피탈이란 걸 보고, 안 과장님 프로젝트인 줄 알았습니다.

오잉?

스타트업 발굴 센스는 여전하시네요!

배 대표님 IR이 예술이거든요!

신 팀장님 선구안도 여전하세요!

오오잉?

헛, 두 분이 아는 사이였구나!

잘 부탁드립니다!

허허, 띄워주고 협상을 끌고 가시려고~

으으, 둘 사이의 신경전이...

앞으로 사전 서면동의 사항은 꼭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세상은 좁다. 이 바닥에서 찍히면 끝일 듯...

호호호

하하하

찌릿

찌릿

투자자 동의에 관한 조항

투자계약서는 투자자와의 약속이 정리된 서류로
① 투자를 받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② 투자를 받은 후 지켜야 할 사항
③ 계약을 어길 경우 부담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처음 약속했던 때와 회사 상황이 바뀔 때가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제[*]조 투자자의 동의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1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건 주식의 발행가격 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 및/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3. 회생 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 회사의 인수, 경영 임대차, 위탁경영, 회사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포기 등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회사의 주요 유형 또는 무형 자산(지적재산권 등)의 처분행위
5. 기타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회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들이 바뀌는 경우 투자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면 이는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항은 회사의 성격이 바뀌는 것에 대한 동의,
2, 3, 4항 회사의 인적·물적 가치가 심하게 침해되는 것에 대한 동의, 5항은 그 외에도 경영 관련 중대결정에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하단 뜻이군요!

○ 투자자 동의 확인 절차

사안 발생	동의 요청 (서면 통지)	동의 확인 (서면 확인)	사안 시행
D-7일 이전	D-7일	D-1일	D-day

○ 투자자 동의에 관한 FAQ

Q. 회사 입장에선 동의권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데 왜 그런 거죠?

Ⓐ 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동의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적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조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위반할 경우 약정 위반 사유가 되어 투자자가 투자계약서에 의거한 권리행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투자계약서 위반 소송에서 상당 부분이 동의권 규정 위반입니다.

Q. 투자계약서에 동의권 외에 협의권 조항이 있는데 다른가요?

Ⓐ 사전적으로 보면 '협의(協議, Consultation)'는 타인과 의논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의(同意,Agreement)'는 타인의 행동 등에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계약서의 '동의' 조항에서 '서면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경영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반대 의사를 밝히라는 것인데, 만약 '협의'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는 경영자에게 함께 '논의'하여 의사결정을 하자는 것으로 투자자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계약서 권고안에서는 협의권 조항을 삭제했고, 일반 벤처 투자계약서에서도 동의권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Q. 순차적 투자를 받은 경우 각 투자자가 각각의 동의권을 갖나요?

Ⓐ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통해 자금이 수혈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지분율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시기를 달리하여 선행, 후행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각 투자자가 개별의 동의권을 갖고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한다면 각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의사를 조율하는 일이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선행 투자 이후 후행 투자가 이뤄질 때는 주주 및 투자자들 사이에 이러한 권리를 조율하는 주주간 합의서 체결이 바람직합니다.

Chapter 6.

이게 계약위반이 된다고요?

2년 후

놀자 놀자 놀자북스!!

자기야, 저 앱 써 봤어?

놀자북스?

당연하지~ 나 만렙 성주야!

헐~ 배틀 한 번 가야겠는데?

내 독서력으로 박살 내주겠어~

흐~ 우리 방은 만화책 노 카운트다!

2년 만에 놀자북스는 독서부분 앱 1위가 됐다!

시기적절한 투자로 팀원이 꾸려지고

제가 그 유명한 놀자북스 개발자예요~

굿 타이밍에 홍보가 이뤄진 결과였다!

?

자기야, 저 사람 변태 같지?

내 쪽으로 붙어, 자기야~

어?

네, 진 대표님! 저도 곧 도착합니다!

같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플랫폼이나 앱 마켓에서 자리 잡는데 레자코믹스 진 대표님 도움이 컸다.

그 보답 차 마련한 자리...

대표님 여깁니다!

배 대표, 어서 들어갑시다!

그 일의 발단은 그 자리에서 시작됐다.

어머, 배 대표 어쩜 맛집도 많이 아셔~!

저희 디자인 팀장이 소개해 준 집입니다~

배 대표, 놀자북스 말이에요.

좀 안타까워요.

네? 뭐가요?

중국에서도 먹힐 텐데 국내에만 머물잖아.

아, 그거요...

우리 레자코믹스 통해 중국 진출하는 건 어때요?

저야 당연히 그러고 싶죠. 근데 아직 현지화에 투자할 여력이...

그렇구나...

그럼 내가 놀자북스에 투자할까?

네에?

저야 좋지만... 어떻게...?

배 대표 주식 일부를 저한테 양도해요. 제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되잖아~

좋은 제안 같은데? 진 대표님 덕본 게 얼만데 못 해드릴 것도 없잖아?

그 정도야 못 해드릴 거 없죠!

어머, 역시 배 대표 시원시원해~

자, 주식양도계약서~

고마운 분 부탁이라 망설일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호 호

그동안 빚진 것도 있으니 주당 20만 원에 드릴게요!

어머! 주당 50만 원은 될 텐데~

고마워, 배 대표!

하하, 별말씀을!

진지희 서명

배태랑

그렇게 기분 좋게 끝날 일인 줄로만 알았다...

놀자 북

놀자 놀자북~!!

놀자북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그 촉이 발동했다...

별 거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난 다시 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이거 심각한데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는 주식 처분!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넵에?!!!

제[1]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 처분
(양도, 이전, 매각,
담보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으헉!!

주식 처분에 대한 가이드는 '주주간 합의서'에 나와 있죠!

주주간 합의서요?

제[2]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양도 10일 전까지, 주요 조건을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셨잖아요?

헛,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만 하면 되나요?

아뇨, 투자자의 피드백도 기다려야 합니다.

응 아니야~

절레 절레

투자자에겐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 그게 뭔데요?

제[2]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 (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우선매수권

'우선매수권'은 매수인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인보다 먼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 지분율은 곧 회사에 대한 권리니까요.

반대로 '공동매도참여권'은 이해관계인과 같이 지분율에 비례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공동매도참여권

그래서 '공동', '매도', '참여권'...

이해관계인이 함부로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자가 피해 입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들이죠.

투자 관계는 역시 신뢰 문제니...

주주간의합의서

이 권리들 보장 없이 주식을 처분해선 절대 안 돼요.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투자자에 서면 통보한 내용대로만 처분할 수 있고, 만약 조건이 바뀌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해요.

아뿔싸!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쿠궁

흑시 이 건으로 저나 놀자북스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덜덜

제[3]조 (주식매수청구권)

② 전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1.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 [15]%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 대금
3. 별지2 주주간 합의서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액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투자자 지분을 매입해줘야 하고,

헉!!

잘못했어요!!

위약벌 및 손해배상

지연배상금

개연책임

별금과 배상금, 지연배상금까지... 배 대표님 개인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어떡하죠?

글쎄요.

일단
진 대표님을
설득해
이 계약서를
무효로 만들고

투자계약서에 담긴
절차대로 투자자 동의 아래
다시 진행해야겠죠.

그렇군요...

이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와 바로 진 대표님을 찾아갔다.

레자 코믹스

진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호호, 난 당연히
장난이라 생각했죠~

면목 없습니다...

정식 계약서라 생각했다면
바로 공증 맡겼게요?

그, 그렇죠...

하지만 놀자북스에
투자하겠단 말은 진심이에요.
배 대표가 절차 좀 밟아줘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진 대표님의 아량으로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넵...

근데 함부로
서명 날인하는
습관은 고쳐요~
경영자라면
특히!

이어 진 대표님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과
공유했다.

서면으로
진행해도 되는데
이렇게 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 대표님, 새 사무실도
구경할 겸 왔죠.

저도 겸사겸사~
또 직접 듣는 게
정확하기도 하고요.

내용은 메일
드린 것과 같습니다.

저흰 놀자북스의
주요거래처인 레자코믹스가
투자자로 들어오는 게
좋은 기회라고 봐요.

끄덕

아~

끄덕

저희도 중국시장 진출 경험이 많은,
레자코믹스 진 대표의 합류가
큰 기회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

흠...

구주매수가 아닌
신주 투자방식이 좋겠습니다.

흠

흠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 대표님과 조율해 볼게요.

결과 알려 주세요~

끄덕

투자자들의 동의와 진 대표님의 양해로
그 날의 사건은 잘 매듭지어졌다.

앞으로 신의를 지키며 열심히
사업에만 매진하겠습니다.

짝

짝

짝

짝

주주간 합의서

회사는 투자계약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 지키는 것으로 투자자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계약서의 경우 이해관계인, 즉 대표의 중요성이 큰 만큼 투자자는 주주로서 이해관계인과 특별한 약정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별지로 정리한 것이 '주주간 합의서' 입니다. 그렇다면 '주주간 합의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계약서 권고안의 예시 조항으로 살펴볼까요.

① 이해관계인의 주식처분에 관련된 조항

제[*]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 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앞서 '투자자의 동의조항'을 통해 투자자는 회사 경영에 참여했다면, 위 조항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 투자의 경우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회사 경영권에 변화를 주는 것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주식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 협상 과정을 통해 투자자의 동의를 구하고 특약을 맺어야 합니다.

② 주식매수청구권에 관련된 조항

제[*]조 (주식매수청구권)

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본 계약으로 인수한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거래 완결에 이르게 한 경우
2. 제4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3.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이해관계인이 별지2 주주간 합의서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② 전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1.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 [15]%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 대금
3. 별지2 주주간 합의서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액

③ 본 조의 주식매수청구는 매수청구 대상 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주식매수청구 서면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말 그대로 투자자가 투자금으로 획득한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이해관계인에게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서 투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계약 위반 사항과 위약금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위의 ①항은 그 경우를 정리한 것인데요, 투자금 입금 전 선행조건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제3조), 투자금 입금일 현재 회사에 대해 투자자에게 진술과 보장한 내용이 다른 경우(제4조), 고의나 과실로 투자금 용도를 위반했거나(제6조), 경영 관련 및 재무 관련 보고에 미흡했거나(제9조), 회계 및 감사에 미흡했을 때(제11조), 이해관계인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 처분을 했거나(주주간 합의서 제1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주주간 합의서 제2조)입니다. 그럼 투자금을 얼마로 돌려주게 될까요? 위의 ②항은 그 액수에 대한 것으로, 투자자가 구매한 주식 가격과 이자를 합친 금액(②의 1), 과거 1년간 주식 거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②의 2), 이해관계인이 투자자 동의 없이 처분한 주식의 가격(②의 3)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하며, 이 내용이 서면 도달할 때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③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에 관련된 조항

제* 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이라고 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이라고 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투자자가 본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에 관해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이란, 제3자보다 앞서 제3자와 같은 조건으로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은 투자자가 매수를 거절해야 제3자에게 처분이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매도참여권은 이해관계인과 함께 제3자와의 거래에 참여하는 권리입니다. 대개 소액 주주가 대주주의 주식 처분에 편승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조항입니다.

○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절차

사안 발생	주식 처분 내용 투자자 서면 통지	권리 행사 여부 회사에 서면 통지	주식 처분
D-10일 이전	D-10일	D-10일 이내	D-day

이해관계인 → 투자자 제공 정보	권리 행사 시 투자자 → 이해관계인 제공 정보
• 주식 처분(매각, 양도, 이전 등) 목적 • 제3자 신원 정보 • 양도주식 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 예정일 등 주요조건	• 우선매수권 행사 시: 매수자 정보 (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한 사람의 정보) •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시: 매도할 주식의 종류, 수량

1) COO(Chief Operating Officer): 기업 내 사업을 총괄하며, 일상 업무의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운영책임자

1) M&A(Mergers & Acquisitions) :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사거나 합병하는 것
2) IPO(Initial Public Offering) :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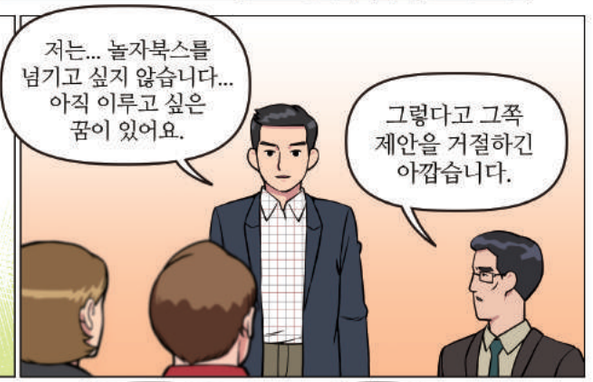

난 놀자북스의 운명이 걸린 또 한 번의 IR을 제안했다.

네, 이사님!

흠, 좋아요! 한 달 뒤 우리 회사에서 뵙죠!

나의 팀원들 역시 나를 전적으로 믿어줬다.

기술 부분을 더 질문할 것 같습니다.

흠, 박 팀장님이 보강자료 좀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어진 한 달의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갔다.

Amazones

저희 놀자북스의 마지막 목표는 이것입니다!

활자매체도 영상매체처럼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

프로젝트 쿠텐베르크에서 리캡차가 했던 것처럼, 위키피디아가 정보를 완성하는 방식처럼, AI가 러프를 잡고 집단지성으로 디테일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흠~

Oh~ Amazing~

오늘 발표하신 내용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마조네스는 배 대표님이 놀자북스를 더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 배 대표님 제안대로 전략적 투자자로서 지분 매수하겠습니다.

안 과장님 아이디어로 시작한 제안을 수락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관련 서류가 준비되면 메일 주세요!

귀국하자마자 이 소식을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투자자들은 아마조네스가 제안한 주당 100만 원 구주매수에 동의해 주었다.

흠~ 서면 동의해 주셨네?

단, 공동매도권참여권을 행사하여 나와 함께 보유 주식의 절반을 매각하겠단 의사도 밝혀왔다.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려고 합니다!

1차 투자 후 7년 6개월 만의 회수...

처음 주당 5만 원으로 투자해주셔서 20배의 투자이익을 거뒀으니 잘 된 거겠지?

스윽

물론이지, 잘했어 태랑 군!

놀자 BooKs

고마워, 놀자북스 군!

실수도 많았지만 이만하면 잘한 거야.

놀자 BooKs

알면다행!

알고 있어... 이 변호사님 도움이 컸다는 거...

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IPO까지 이뤄내면 더 좋아할 거야!

놀자 BooKs

당연하지!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갈 거야!

꿈이 있는 한 내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유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투자계약서만큼은 절대 실수 안 할 자신이 생겼다!

태랑 군, 나 유니콘 타고 싶어!

그래, 태워줄게! 가자!

M&A (기업인수·합병)

M&A(Mergers & Acquisitions)는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사거나 합병하는 것으로, 기업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고, 기업인수는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M&A는 기본적으로 주식 확보를 통해 이뤄지는데, 주식 확보의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입니다.

○ M&A 종류 (거래 성격에 따라)

우호적 M&A
대상 기업의 경영층과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M&A

VS

적대적 M&A
대상 기업의 경영층이 반대하는 가운데 주주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M&A

○ M&A 방법

주식인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 회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주식만 매수하면 되므로 거래 시간과 비용 절감.
기업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 없이 경제적·법적 실체로 합치는 방법. 기존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쳐진 뒤 없어지는 흡수합병과 합병 후 새로운 기업으로 바뀌는 신설합병이 있음.
기업분할	독립된 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할 회사를 설립해 대상 회사를 나누는 방법. 대개 M&A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대상 기업의 내실 있는 사업 부서만 M&A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영업양수	독립된 영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시키는 방법. 독립된 사업 부문의 자산, 부채, 조직, 인원, 권리와 의무 등 영업에 필요한 유·무형 자산 일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M&A가 부실기업 인수와 그룹 계열사 합병입니다. 그래서 M&A 하면 기업사냥꾼, 적대적 M&A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선진국에서는 신기술 확보, 글로벌 유통망 확대 등 기업의 세계화 전략에 이용되며, 금융적 합작관계 또는 전략적 제휴 관계 등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IPO (기업공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CEO라면 누구나 상장을 꿈꾸겠죠?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상장의 첫 단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주식을 공개 매각하는 절차가 바로 IPO(기업공개)입니다.

○ IPO의 방법

기존 주주 지분 일부 공개매각	기존 주주들의 주식 중 일부를 공개 매각하는 방법. '구주 매출'이라고도 하며 IPO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은 없음.
신주 발행, 투자자 공개 모집	신주를 발행해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는 방법. '신주 모집'이라고도 하며 발행된 신주를 통해 신규 자금 유입.
구주 매출 + 신주 모집	구주매출과 신주 모집을 섞어 진행하는 방법.

○ 공모와 사모

공 모
불특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증권 발행

VS

사 모
소수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증권 발행

공 모 절 차

Ⓐ **증권사와 계약 체결**: 주식 인수 및 모집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길 증권사 선정 및 계약
Ⓑ **공모 희망가격 결정**: 기업 실사를 거쳐 '공모 가격 희망 범위(공모가 밴드)'를 주관 증권사와 기업이 결정
Ⓒ **제출 공시**: 증권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시 준비.
Ⓓ **기업 설명회**: 일반 대중 대상 혹은 언론사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 개최
Ⓔ **수요 예측 및 최종 공모 가격 결정**: 공모가 밴드와 기업설명회 반응 등을 토대로 수요 예측하여 최종 공모 가격 결정
Ⓕ **배정과 청약**: 우리사주조합(20% 우선 배정), 일반 청약자,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배정 확정 후 일반 청약 접수 시작
Ⓖ **신규 상장**: 최종 심사를 거쳐 신규 상장

주식시장에 상장도 하기 전에
기업가치가 1조를 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의 CEO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나의 새로운 IR은 이전과 달랐다.

지금부터 놀자북스 IPO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놀자 Books

한국지사는 연 매출 100억 원, 순수익 50억 원이며 미국지사는 연 매출 1조 원, 순수익 5,000억 원...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자, 이제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배 대표님, 지금 소감 어떠십니까?

일단 떨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투자자들 얼굴이 떠오르네요.

또, 제가 투자계약서를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놀자북스 설립 12년 6개월, 첫 투자 후 10년 6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IPO를 하게 된 것이다.

연극이 끝난 무대 위에 혼자 남은 듯, IPO 발표 후 희열과 공허가 교차했다.

마침내 꿈을 이뤘다는 희열과 더 이상 꿈이 없다는 공허...

후 우~

이젠 뭔가... 다른 걸 추구하고 싶었다.

놀자북스 군, 혼자서도 잘하네!

진격하라!!

배 대표님!

네?

배 대표님 시간 되시면 저 좀 도와주실래요?

네, 제가요?

그때 이 변호사님이 내게 새로운 꿈을 보여주셨다!

당연하죠, 누구 부탁인데요!!

매일벤처신문
놀자북스 세계시장
THE TIMES
6개월 후
오늘은 놀자북스로 글로벌 e북 시장을 석권한 배태랑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놀자북스 대표 배태랑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 투자유치의 경험을 후배 창업인들과 공유하고자 투자유치 컨설팅회사 놀자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후배 창업인들을 위한 멘토의 길을 걷게 됐다.
투자유치를 위해선 IR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투자계약서도 중요합니다!
IR을 잘하는 게 투자유치를 위한 검이라면, 투자계약서를 잘 아는 건 투자유치를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사실 저만큼 투자계약서로 천국과 지옥을 다닌 사람도 드물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해 투자유치와 투자계약 모두에 성공하는 후배 창업자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건강한 창업환경 하에서는 신성장동력의 다양한 원천 소스들이 나오니까요!
짝 짝 짝 짝 짝
배 대표님!
이 변호사님~~!!
방송도 나오시니 더 바빠지시겠네요!
다 변호사님 덕분이죠.
항상 변호사님 덕을 보네요. 위기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꿈도 주시고!
그런가요?
나의 경험이 나와 같은 처지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화이팅!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도 참석해 주시겠어요?
당연하죠! 없는 시간도 만들어 갈 겁니다!

부록1. 법률용어의 해설

※ 일반인 입장에서 기술하였습니다.

구분	용 어	내 용
1	전환우선주	- 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에 몇 가지 권리(다양하게 약정)가 주식의 내용에 추가되는 주식(후술) -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전환주식) + 우선주
2	투자자([*]조합)	- 투자자가 [*]조합인 경우 펀드(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기구)의 일 형태로 이해
3	이해관계인	- 보통 대주주 또는 핵심인력 기재
4	종류주식	- 보통주에 대비 되는 개념으로 보통주에 몇 가지 권리가 추가 부여된 주식을 통칭하여 종류주식이라 함 - 이익의 배당, 의결권의 행사, 잔여 재산의 분배, 상환 및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통주와 다른 주식
5	발행할 주식의 총수	- 그 회사가 정관에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주식의 한도 수
6	발행주식의 총수	-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총수
7	기명식	-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주주명부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명부에 주주가 누구인지를 기재하는 형태의 주식 - 기명식 주식은 주주의 성명을 주권에 게재·날인·배서해야 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식이 양도
8	액면가	- 회사가 정관에 따라 정한 1주의 금액 - 주권(株券)의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
9	발행가(액)/인수가액	- 회사의 실제 평가가치에 따른 1주의 금액이며 보통 액면가 × [*]배로 표현됨 - 회사는 기업가치가 높거나 상승될 것으로 예상될 때 1주를 발행할 때 액면가에 몇 배를 곱한 금액을 받고 주주(투자자)에게 주식을 부여함
10	총 인수대금	- 인수가액의 총합(1주당 인수가액 × 인수주식 수)
11	납입기일	- 인수대금을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 날
12	납입계좌	-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회사의 계좌
13	의결권	- 1주당 1개의 표결권을 가지면 주주총회에서 찬반 의결을 행사하는 권리 -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가
14	발행일	- 주금을 납입한 다음날
15	배당	- 회사가 1년 결산을 하고 법률적, 회계적으로 계산된 배당가능이익이라는 것을 주주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
16	(이익배당)우선주	- 보통주 보다 배당을 먼저 받는 것. 단 참가적 우선주여서 결과적으로 보통주주보다 더 받거나 같게 배당을 받음
17	참가적	- 우선주가 배당을 먼저 받고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8	누적적	- 전년도에 배당받지 못한 우선주 배당률을 누적하여 차년도에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9	(청산잔여재산분배) 우선주	- 회사가 해산을 하고 청산(재산정리)을 할 때 회사의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회사 재산에 대하여 배분받을 권리를 말하며 청산잔여재산분배우선권은 보통주주보다 우선하여 배분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를 말함. 단 채권자에 우선할 수는 없음
20	전환권	- 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권리 - 전환권은 전환하면서 전환비율에 따라 1우선주당 교환되는 보통주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에 의미가 있음
21	전환비율	-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비율 - 나열된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비율이 조정 - 리픽싱(Refixing)이라고 함
22	유상증자	- 회사가 신규 주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 자본금의 늘리는 행위를 말함
23	주식관련사채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말함
24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법인이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
25	주식배당	- 주식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 - 일반적으로 주식의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신규발행의 주식으로 대신하는 배당

구분	용 어	내 용
26	무상증자	- 신규 자금의 납입 없이 회사의 재원으로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수를 늘리는 것 - 주주의 주금 납입없이 기업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자본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형태의 증자
27	합병	- 회사와 회사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행위 -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일단의 행위
28	주식의 분할/병합	- 주식의 분할은 주식을 쪼개는 행위 - 주식의 병합은 주식을 합치는 행위
29	선행조건	-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조건
30	진술과 보장	- 회사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사실을 말하고 이러한 사실이 현 시점에 문제가 없다고 보장하는 행위
31	정관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 준칙 -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 - 회사 설립 당시부터 필요하며 정관에 따라 회사가 조직 운영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서
32	지분증권	- 주식 또는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권리 등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33	주권	- 주식을 유가증권화 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장한 증권 - 주권이란 주식, 즉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34	주주명부	- 주주가 기재된 문서 -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회사의 장부
35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명칭, 임원 등 기본사항이 기재된 공적 문서
36	회생	- 회사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 절차를 밟는 행위 - 회사의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채무를 조정하고 회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37	파산	- 회사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는 법인을 소멸하는 행위

구분	용 어	내 용
38	해산	- 회사를 소멸하도록 사유 - 회사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
39	청산	- 해산 사유의 발생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는 행위 - 회사 등의 법인 ·조합이 해산에 의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40	분할	- 회사를 분리하는 행위 - 1개의 법인을 나누어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
41	분할합병	- 회사를 분할하여 다른 회사와 합치는(합병) 행위
42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
43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에 의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의 제도
44	영업양수도	- 회사의 영업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
45	우선매수권	- 타인이 가진 주식을 제3자보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46	공동매도참여권	- 제3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자신의 주식을 함께 매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7	주식매수청구권	- 제3자(이해관계인)에게 주식을 매입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48	연대책임	- 원래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똑같이 부담하는 것

부록2. 보통주 투자계약서 양식

(보통주) 투자계약서

아래의 당사자들은 [ ]년 [ ]월 [ ]일 다음과 같이 [회사명]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1. 투자자: [조합명] (이하 "투자자")
   주소: [ ]
   대표자 업무집행조합원 [운 용 사]
   대표이사 [ ]

2. 회사: [피투자기업] (이하 "회사")
   주소: [ ]
   대표이사 [ ]

3.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제1조 (신주의 발행 사항)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한다(이하 투자자가 인수하는 주식을 "본건 주식"이라고 함).

1.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 [ ] 주
2. 기 발행주식의 총수 : 기명식 보통주 [ ] 주, 종류주식 [ ] 주
3. 금회의 신주발행 내역
   가.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 ] 주
   나. 1주의 금액(액면가) : 금 [ ] 원
   다. 본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수가액) : 금 [ ] 원
   라. 본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 : 금 [ ] 원
   마.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 : [ ]년 [ ]월 [ ]일
   바. 본건 주식 인수대금의 납입계좌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제2조 (본건 주식의 내용)
본건 주식의 내용은 보통주로 한다.

제3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의한 투자자의 의무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3.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회사 내부 절차 (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4.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건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7.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경영상태 또는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이 없을 것

제4조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까지 아래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회사의 본 계약의 체결일 및 납입기일 기준 회사의 지분증권(발행주식 현황, 주식연계사채 발행 현황, 주식매수선택권 및 기타 회사의 지분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정) 현황은 [부록1. 지분증권 현황]과 같다. 회사의 발행주식 등 지분증권은 적법하게 납입되었으며 가장납입된 사실이 없다.
2.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 ]년 [ ]월 [ ]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3.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다.
4. 회사는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다.

제5조 (거래의 완결)
① 투자자는 납입기일(또는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소정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납입계좌에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이 날을 본 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 본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단,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주권미발행확인서.
2.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납입영수증
3. 변동사항이 반영된 주주명부 사본
③ 회사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고,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①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투자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경업 및 퇴사 등 제한)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제공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2]년간 회사의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년간 회사에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퇴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투자자의 동의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1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건 주식의 발행가격 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 및/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회사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포기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회사의 주요 유형 또는 무형 자산(지적재산권 등)의 처분행위
5. 기타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9조 (보고 및 자료 제출)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의 경영상황 및/또는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사십오(45)일 이내
2. 반기보고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
3. 분기보고서: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해, 본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발행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율 총계가 거래완결 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교부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위 한도 수량을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 및 업무감사)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계약의 효력 및 내용변경)

①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14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회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및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행한 진술과 보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회사와 함께 본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주주간 합의)

투자자와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별지2 주주간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 부록: 지분증권 현황 첨부

[이하 날인을 위하여 여백]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 20[ ]. [ ]. [ ].

투자자: **[조합명]** (이하 "투자자")
주소: [ ]
대표자 업무집행조합원 [운 용 사]
대표이사 [ ] (인)

회사: **[피투자기업]** (이하 "회사")
주소: [ ]
대표이사 [ ] (인)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성 명: [ ] (인)
생년월일: [ ]
주소: [ ]

(별지)

【주주간 합의 사항】

제1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이라고 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이라고 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일십[1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십[1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투자자가 본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주식매수청구권)
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본 계약으로 인수한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완결에 이르게 한 경우
2. 제4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3.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이해관계인이 별지2 주주간 합의서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② 전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1.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 [15]%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대금
3. 별지2 주주간 합의서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액

③ 본조의 주식매수청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주식매수청구서면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록3.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양식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아래의 당사자들은 [ ]년 [ ]월 [ ]일 다음과 같이 [회사명]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1. 투자자: [조합명] (이하 "투자자")
   주소: [ ]
   대표자 업무집행조합원 [운 용 사]
   대표이사 [ ]

2. 회사: [피투자기업] (이하 "회사")
   주소: [ ]
   대표이사 [ ]

3.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제1조 (신주의 발행 사항)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한다(이하 투자자가 인수하는 종류주식을 "본건 주식"이라고 함).

1. 발행할 주식의 종수(수권주식수) : [ ] 주
2. 기 발행주식의 총수 : 기명식 보통주 [ ] 주, 종류주식 [ ] 주
3. 금회의 신주발행 내역
   가.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종류주식 [ ] 주
   나. 1주의 금액(액면가) : 금 [ ] 원
   다. 본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수가액) : 금 [ ] 원
   라. 본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 : 금 [ ] 원
   마.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 : [ ]년 [ ]월 [ ]일
   바. 본건 주식 인수대금의 납입계좌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제2조 (본건 주식의 내용)

본건 주식의 내용은 [별지1 본건 주식의 내용]과 같다.

제3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의한 투자자의 의무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3.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회사 내부 절차 (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4.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건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7.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경영상태 또는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이 없을 것

제4조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까지 아래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회사의 본 계약의 체결일 및 납입기일 기준 회사의 지분증권(발행주식 현황, 주식연계사채 발행 현황, 주식매수선택권 및 기타 회사의 지분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정) 현황은 [부록1. 지분증권 현황]과 같다. 회사의 발행주식 등 지분증권은 적법하게 납입되었으며 가장납입된 사실이 없다.
2.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 ]년 [ ]월 [ ]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3.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다.
4. 회사는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다.

제5조 (거래의 완결)

① 투자자는 납입기일(또는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소정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납입계좌에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이 날을 본 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 본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단,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주권미발행확인서.
2.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납입영수증
3. 변동사항이 반영된 주주명부 사본

③ 회사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고,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경업 및 퇴사 등 제한)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제공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2]년간 회사의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년간 회사에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퇴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투자자의 동의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1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건 주식의 발행가격 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 및/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회사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포기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회사의 주요 유형 또는 무형 자산(지적재산권 등)의 처분행위
5. 기타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9조 (보고 및 자료 제출)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의 경영상황 및/또는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사십오(45)일 이내
2. 반기보고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
3. 분기보고서: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해, 본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발행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율 총계가 거래완결 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교부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위 한도 수량을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 및 업무감사)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계약의 효력 및 내용변경)
①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14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회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및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행한 진술과 보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회사와 함께 본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주주간 합의)
투자자와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별지2 주주간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 부록: 지분증권 현황 첨부

[이하 날인을 위하여 여백]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 20[ ]. [ ]. [ ].

투자자: [조합명] (이하 "투자자")
주소: [ ]
대표자 업무집행조합원 [운 용 사]
대표이사 [ ] (인)

회사: [피투자기업] (이하 "회사")
주소: [ ]
대표이사 [ ] (인)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성 명: [ ] (인)
생년월일: [ ]
주소: [ ]

(별지1)

【본건 주식의 내용】

제1조 (의결권)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 보통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 ]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2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 ]%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는다.

제3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 ]%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본건 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 ]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가 본건 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3. 본건 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그 비율에 따라 무상지급을 받는다.
4.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별지2)

【주주간 합의 사항】

제1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이라고 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이라고 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일십[1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십[1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투자자가 본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주식매수청구권)
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본 계약으로 인수한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완결에 이르게 한 경우
2. 제4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3.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이해관계인이 별지2 주주간 합의서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② 전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1.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 [15]%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대금
3. 별지2 주주간 합의서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액

③ 본조의 주식매수청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주식매수청구서면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투자유치가 처음이세요?

- 초기기업에서 IPO까지 투자계약서 바이블 -

발 행 일 2019. 6. 5.
발 행 인 한국벤처투자㈜
발 행 처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한국벤처투자(KVIC)
전화: 02)2156-2000
홈페이지: https://www.k-vic.co.kr
내용자문 이종건 변호사 (법무법인 이후)
만화제작 ㈜플라잉피그

© 이 책의 저작권과 판권은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있습니다